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61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민형배·문정복·김문수

임오경 • 이개호 • 이기헌

전재수 · 김성환 · 김동아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6조의2신설).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3장제1절에 제3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대통령 재직 중의 공판정지)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공판절 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에 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06조의2(대통령 재직 중의 공
	판정지)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
	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
	기 중 공판절차(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정지하여
	<u>야 한다.</u>